## 111. 연구원에서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명되었다.

 성별
 남
 나이
 31세
 직종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업무관련성
 높음

 1. 개요:
 근로자 (망)최○○은
 2006년 1월 1일 OO타이어(주) OO연구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7년 5월 20일 새벽 3시경에
 자택에서 취침도중 사망하였다. 부검을 시행한

-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망)최○○은 입사 초부터 RE 개발팀에 배치되어 사망할때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E 개발팀의 업무는 크게 타이어 개발 업무와 타이어몰드 개발 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망)최OO의 수행업무부서는 주로 타이어 개발 업무에 해당되었다.. (망)최OO가 주로 담당하였던 타이어 개발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업무 및 각종 연구보고서 작성, 벤치마킹 업무 및 보고서 작성, 타이어설계 신제품 개발 및확산 업무이며, 이 업무는 교체용 승용차 타이어 제품의 개발과 기 개발된 신제품의 Spec을 변형하여 다양한 차량의 적용토록 확산 개발하는 것이며, 도면 설계', '시험용 Spec 작성 및 발생(X-spec)', '시험용 제조', '실내 및 실차 테스트 의뢰', '제품시험 결과표 송부', '양산시작품 시방서 발행'(제조, 문자, 개별 시방서)'. '정규 시방서 발행'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의학적 소견: 부친에 의하면 최OO는 과거력상 심장질환이나 기타 질환이 없었고, 2006년 및 2007년 건강검진 수검자료 결과를 살펴보면 최OO는 키 172 cm, 무게 70 kg 이었으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없었다.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만한 다른 소견은 없었다. 부검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심장의 관상동맥과 대동맥에서 경도의 죽상경화를 보고, 심장의 좌심실 벽에서 암적색 색조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기타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손상 및 질병이 확인되지 않았고", "혈중 알콜 농도는 0.05% 미만"이고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일반 독물 및 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기술 하였다.

## **4. 결론:** 근로자 (망)최○○은

- ① 사망당시 위 질환의 촉발요인인 만성피로, 수면부족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 ② 일반적으로 연구원의 업무는 높은 업무부하 및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어, 이는 망인의 만성피로 및 수면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③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50시간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며
- ④ 과거 개인력 상 위 상병을 유발할 만한 소인이 없었으므로

근로자 (망)최OO의 급성심근경색은 업무에 따른 '만성적 과로'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